

문서번호	예산법무과-4450	
보고일자	2018. 12. 05.	
공개여부	부분공개(5)	
연락처	성명	김종만
	☎	032-625-2532

주무관	재정심사팀장	예산법무과장	경제국장
김종만	박희순	이태훈	이진선
협조	전결 2018. 12. 5.		

부천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

요 지

부천도시공사 사장이 추진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장의 연봉과 평가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코자 함.

□ **근 거** :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(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) 등

□ 평가개요

○ 대상기간 : 2017. 1. 1. ~ 2017. 12. 31.(2017년 실적)

○ 대 상 자 : 부천도시공사 사장

※ 2017. 12. 29.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부천도시공사로 전환됨에 따라
2017년 당시 근무한 공단 이사장(임명호)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임

○ 분 야

- 공통목표 :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2개 분야

- 자체목표 : 경영수지 개선 등 4개 분야

□ 평가결과 : S급(평점 92.9점)

○ 전년도 평가등급 : S등급(평점 93.4점)

《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(계약서 별표 5)》

점수	90점 이상	90점 미만 ~ 80점 이상	80점 미만 ~ 70점 이상	70점 미만 ~ 60점 이상	60점 미만
등급	S	A	B	C	D

예산법무과

- 부 천 도 시 공 사 사 장 -

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보고

부천도시공사 사장이 추진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장의 연봉과 평가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

I 관련근거

-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(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)
- 경영성과계약서 제8조(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)

II 평가개요

- 평가대상기간 : 2017. 1. 1. ~ 2017. 12. 31.(2017년 실적)
- 평가대상자 : 부천도시공사 사장
 - ※ 2017. 12. 29.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부천도시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2017년 당시 근무한 공단 이사장(임명호)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임
- 평가자 : 부천시(예산법무과장 등 3명)
- 평가분야
 - 공통목표 :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2개 분야
 - 자체목표 : 경영수지 개선 등 4개 분야
- 평가방법
 -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
 -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거

III 평가결과

- 평가결과 : S등급(평점 92.9점)
 - 경영성과 계약에 따른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(자체)

점수	90점 이상	90점 미만 ~ 80점 이상	80점 미만 ~ 70점 이상	70점 미만 ~ 60점 이상	60점 미만
등급	S	A	B	C	D

IV 총 평

- 부천도시공사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된 정책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, 사회적 책임이행, 정부 권장정책 준수 등에 450여명의 임·직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
-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(2017년 실적)에서 전년도에 비해 2단계 상승하여 최상위등급인 **“가등급”을 받았음**
- 또한 정부혁신평가에서 “우수등급”을 받는 등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 도입,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등에 기인한 우수한 성과임

잘 된 점

- 경영평가지표는 공사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지향점이지만 공사는 이들 경영평가 지표 외에도 중요한 핵심과제들에 부서들의 자원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 공사의 이러한 성과관리 시스템은 다른 지방공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.
- 일자리창출반/일자리개선반으로 구성된 “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단” (외부전문가 2명 포함 16명)의 활동을 통해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가져옴.
- 소비자중심경영(CCM) 재인증을 통한 CS경영체제의 외부인증을 획득하고, 국가공인 CS리더스 관리자 자격증 취득(총 28명)을 통한 전담 인력 체계를 양호하게 구축하여 전사적 CS 실행 인프라를 구축함.
- 시설·안전관리체계 일원화, 물적·인적피해 최소화 관리강화, 재난별 대응매뉴얼 수립,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의 전략과제를 추진하여 대외 전문기관 인증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안전대상 우수기업상 수상 및 공간안전인증 획득의 주요한 성과를 거둠.

미흡한 점

- 보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, 고도화 되어 있지 않고, 미흡한 수준이며, 공사의 내·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전사적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함.
- 내부 평가시스템 운영 및 성과 모니터링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,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사의 중요한 핵심성과의 하나로 실적을 창출해가기 위해서는 내부 성과관리시스템에 해당 분야의 핵심성과지표(KPI : Key Performance Indicator)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.
-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사차원의 청렴윤리담당관을 규정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, 청렴 내부강사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렴동아리 등의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.

V 세부평가결과

I. 평가기준 및 항목 : 6개분야

- 평가분야 지정

평 가 분 야	배 점	평 가 자
총 계	100점	
①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	20점	재정심사팀장 박희순
② 고객만족 증진	15점	재정심사팀장 박희순
③ 공단운영의 활성화	30점	행정6급 김종만
④ 발전적 노사문화 정착	10점	행정6급 김종만
⑤ 시 정책 준수	15점	행정6급 김종만
⑥ 경영수지 개선	10점	행정6급 김종만

※ 별 첨 :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결과내역

II. 항목별 세부 평점결과 : 92.9점

경 영 목 표	평가기준	목표치	이행실적	배점	득점
계				100	92.9
1. 차질 없는 공공 서비스 제공 (20점)	1-1.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공익성 확보	31회 이상	47회	10	10
	1-2.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문제해결	98% 이상	100%	10	10
2. 고객만족 증진 (15점)	2. 고객평가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	전년대비 7% 이상 증가	89.95%	15	13.5
3. 공단운영활성화 (30점)	3-1. 시설관리의 안전성 제고	전년대비 5% 미만 감소	14건 ↓	15	15
	3-2. 체육분야 이용자수 증가율	전년대비 7% 이상(이용객수)	95,324명 ↑	15	13.4
4. 발전적 노사문화 정착(10점)	4. 노사협력 프로그램 추진 실적	20회 이상	15회	10	6
5. 시 정책 준수 (15점)	5. 시 정책 준수	97%이상	97.2%	15	15
6. 경영수지 개선 (10점)	6. 대행사업 운영성과율	전년대비 7% 이상 증가율	12.6%	10	10

VI 평가결과 조치

○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사장 평가급 지급률 반영

※ 2018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(2017년도 실적) 결과 : “가” 등급

관련규정

【지방공기업법】

제58조의2(사장과 경영성과계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 목표,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규정

【경영성과계약서】

제 8 조(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)

- ①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(이하 “목표이행실적평가”라 한다)는 시장이 행한다.
- ② 제1항의 목표이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배점 및 평가기준, 목표치와 기준치는 【별표 3~4】와 같다.
- ③ 목표이행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점수를 부여하며, 그 기준은 【별표 5】와 같다.

제 9 조(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)

- ① 이사장의 경영성과(“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8조에서 규정하는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”를 말하며, 이하 같다)는 성과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.
- ② 시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【별표6】 및 【별표 7】과 같다.
- ③ 평가대상 사업년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,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이사장에 한하여 적용한다.

붙임 항목별 세부 평가결과 내역 1부. 끝.